

예 산 총 칙

2015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758,800,731	112,764,022
일반회계	3,215,709,124	96,471,274
특별회계	543,091,607	16,292,748
공기업특별회계	271,556,526	8,146,696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271,556,526	8,146,696
기타특별회계	271,535,081	8,146,052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8,932,872	267,986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	22,637,148	679,114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04,037,070	6,121,112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16,881,121	506,434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15,982,000	479,460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3,064,870	91,946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와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3,287,641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44,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